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455-10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

202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1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 1

제1절 의의 ····· 3

제2절 평가절차 ····· 3

제2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 5

제1절 평가대상 기관 ····· 7

제2절 평가지표 체계 ····· 7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 10

제3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 27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 29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40

제4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 47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 49

제2절 후속조치 등 ····· 50

[별첨] 기관별 평가편람 ····· 53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55
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61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67
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73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80
6. 한식진흥원 ····· 88
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96
8. 축산환경관리원 ····· 101

제 1 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제1절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427호)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 기타공공기관은 훈령 제9조에 따라 2024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 2 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1절 평가대상 기관

○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 기타공공기관(8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단, 기관 특성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일부 세부평가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배점은 평가단에서 조정한다.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 평가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30	7.5*	22.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0	20	-
	소 계	**50**	**27.5***	**22.5**
합 계		**100**	**67.5***	**32.5**
가점 (5)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3**	**-**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1**	**-**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1**	**-**
감점 (△2)	총인건비 관리	**(△2)**	**-**	**(△2)**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가중치에 따른 최대 변동분을 의미함

□ 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경영실적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

○ 기관별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기관별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가점').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총인건비 관리 지표는 감점지표로 전환하여 평가한다. 총인건비 관리(감점)를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국정감사 등에서 세부평가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지표의 득점에서 감점할 수 있다.

* 지적사항 예시: 장애인고용 실적 저조, 여성임원 비율 저조 등

○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그 중대성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위법행위 예시: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
-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 감사원, 주무부처 감사 등에 따른 조치사항
- 경찰 입건, 검찰 기소 등 수사결과
-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국회 등 외부기관의 비위행위 적발 등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50점]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경영성과달성 등 기관장 및 경영진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비계량 4점)
세부 평가내용	①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할 대내외적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과 대처 전략 등 ③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이사회 구성 및 역할 분담체계의 적절성,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강화를 위한 장치들의 실효성 등 *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평가 시 의결 안건, 사전심의율, 수정의결안건, 보고안건, 경영자문, 경영제언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④ 대내외 이해관계자(조직 구성원, 고객, 주무부처, 유관기관 등)와 비전 및 전략 등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하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관장과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⑤ 주요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과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6점)
세부 평가내용	① 기관의 설립목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전 핵심가치 경영목표의 설정 및 이와 연계된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중장기 발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계획 간 연계성 수준 등 *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ESG 등을 고려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의 실행을 위한 핵심가치 공유, 조직 인력 예산배분, 핵심사업 이행 및 기능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 핵심사업과 기관 목표와의 연계성 수준, 핵심사업의 방향 및 규모, 범위의 적정성 수준 등 ②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불필요한 내부 절차의 감소 및 폐지, 복잡한 업무의 간소화, 업무 수행에 있어 조직 내 외부 전문가의 활용 범위 및 실적, 내부 구성원을 위한 업무표준화 노력 및 업무수행지침 작성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노력 * 업무프로세스 혁신, 혁신추진조직 구축, 혁신활동 보상, 혁신역량강화, 혁신네트워크 구축, 혁신 협업 등 * 규제개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 감사,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지표정의	기관의 경영목표, 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및 반영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한다. (비계량 3점)
세부 평가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결과 반영

(3) 국민소통 [3점]

<table>
<tr><th>평가지표</th><th>세부평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 (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연도별 배점 반영)
<table>
<tr><td>벌점</td><td>0점</td><td>0 초과
1.5 이하</td><td>1.5 초과
5.0 이하</td><td>5.0 초과
10.0 이하</td><td>10.0 초과
20.0 이하</td><td>20.0 초과</td></tr>
<tr><td>득점</td><td>1.0</td><td>0.8</td><td>0.6</td><td>0.4</td><td>0.2</td><td>0</td></tr>
</table></td></tr>
<tr><td>지표정의</td><td>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다. (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평점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이상 우수 기관은 8:2, 85점이상 양호기관은 7:3, 80점이상 보통기관은 6:4, 80점미만 미흡 기관은 5:5
② 고객만족도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
- 고객만족도 지수 = 100 - (90 - 평가년도 조사결과) × 2
* 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③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 전년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점 만점으로 함
* 기준점수는 90으로 하되 전년도 조사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조사결과를 사용
④ 신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기관은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로만 산출</td></tr>
<tr><td>지표정의</td><td>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로 국민참여 기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③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td></tr>
</table>

2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실적 등을 평가한다. (계량 1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0.7)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12 × 0.7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frac{\text{월별 장애인 고용인원(상시근로자)}}{\text{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 의무고용률(3.6%)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근로자 중 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사 ※ 제출 증빙자료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정원 50인 미만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해당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평가대상 전 기관의 평균 점수를 부여 * 단, 의무고용 비해당기관이라도 장애인 고용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무고용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평가대상 전 기관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반영 ②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유공자 채용 실적 ÷ 우선고용인원 × 0.3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3%)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인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사 ※ 제출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채용실태 통보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 기관 제출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 및 성과,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고용의 질 개선(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제고, 근무여건 개선, 초과근로 감축 등)을 위한 추진 전략 또는 계획의 적정성 ②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및 탄력정원제 실시, 임금피크제 운영 노력 및 성과 등 ③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헌혈공가 도입 여부 등 ④ 채용과정 및 채용 후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수행능력중심평가, 고졸자·여성·무기계약직·별도직군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적절한 처우개선 등 ⑤ 고졸자, 지역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고졸자) 기관별 고졸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채용계획 수립·이행 실적 * (지역인재) 비수도권 및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비율 달성 노력 * (장애인) 장애인고용 컨설팅 이행사항 추진 등 장애인 채용 노력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⑥ 여성임원·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임원 : 본부직제상 기관장·이사·감사 관리자 :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산업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운영,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예방 및 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② 안전관리 역량 수준 *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 내·외부 안전교육·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 실시 여부,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 등 * 안전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이행, 시설 사전점검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의 적정성, 소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 * (사고 발생 건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후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활동의 적정성, 사고처리·보상,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사고 이력 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③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단,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과정에서 안전법령·국가정보원법(정보보안지침)·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안전법령 위반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등 안전법령상의 의무 위반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table>
<tr><th>평가지표</th><th>세부평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계량 2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결과 반영
※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점 만점으로 환산 반영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1.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반영
<table><tr><th>구분</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r><tr><td>득점</td><td>1.0</td><td>0.6</td><td>0.2</td></tr></table>※ 감사결과 환산점수 :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점수 :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등급 : 환산점수 낮은 순으로 상위 25% 우수 (2개), 중간 50% 보통 (4개), 하위 25% 미흡 (2개)

③ (시행예고)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수준 평가
-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가 확대 시행 (`24년 예정) 되면 평가결과를 0.5점으로 반영
※ ②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결과에 대한 가중치를 0.5점으로 조정
<table><tr><th>국정원 평가결과</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r><tr><td>득점</td><td>0.5</td><td>0.3</td><td>0.1</td></tr></table></td></tr>
</table>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table>
<tr><th>평가지표</th><th>세부평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 (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6)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 (0.4)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td></tr>
<tr><td>지표정의</td><td>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td></tr>
</table>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table>
<tr><th>평가지표</th><th>세부평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상생·협력을 위한 자체평가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 산출방법: 기관별 실적 ÷ 자체평가 기준 × 가중치
<table>
<tr><th>항목</th><th>자체평가 기준</th><th>기관별 실적
(비율, %)</th><th>가중치</th></tr>
<tr><td>지역농산물 구매</td><td>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td><td rowspan="8">구매실적</td><td>0.2~0.4</td></tr>
<tr><td>중소기업생산품</td><td>구매총액의 50%</td><td>0.15~0.25</td></tr>
<tr><td>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td><td>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td><td>0.1~0.15</td></tr>
<tr><td>여성 기업생산품</td><td>구매총액의 5%</td><td>0.1~0.15</td></tr>
<tr><td>장애인생산품</td><td>구매총액의 1%</td><td>0.15~0.25</td></tr>
<tr><td>기술개발생산품</td><td>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td><td>0.1~0.15</td></tr>
<tr><td>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td><td>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td><td>0.1~0.15</td></tr>
<tr><td>온누리상품권</td><td>경상경비의 1%</td><td>0.1~0.15</td></tr>
</table></td></tr>
<tr><td>지표정의</td><td>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이용(중소기업에 어린이집 개방 등) 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②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선지급률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활용, 직불 조건부 발주, 표준계약서 활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 여부,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행 등</td></tr>
</table>

(5) 윤리경영 [1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경영활동 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관련 내부규정(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비리 행위자 처벌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갑질 근절방안 마련 이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이행,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신고, 교육 실적 등 * 회계담당자 교육·훈련지원, 회계 관계 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 통제 규정 마련 및 이행 등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 노력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 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참조)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 및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8점)
세부 평가내용	①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 사업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신규·폐지 사업 선정 시 기준 수립 등 타당성 확보 노력, 사업 예산구조 변경 등) ②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③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집행여부 * 휴직 정직자 보수지급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사내대출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 전년대비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재무예산성과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계량 3점)
세부 평가내용	① 재무성과 관련 세부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의 재무집행 성과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 재무예산성과 세부평가지표 예시 -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 -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7점)
세부 평가내용	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인력운영계획(직무·직급별 인력운영계획 등) 및 이에 따른 직제규정의 적정성, 기관의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 여부,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구조 및 기능 개선 노력과 성과 * (인력배분) 재배치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추진실적 등 ②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인사규정, 임원선임, 승진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의 합리성 등 ③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구성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들의 직무능력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커리어패스 설계, 교육성과를 인사평정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④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전사 목표 및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운영, 조직 및 개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적정성, 성과 평가방법의 적정성 및 신뢰성, 자체성과급 등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등 ⑤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의 운영,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승진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기반 구축 등 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중소·벤처기업 지원근무 실적 등), 복무·성과관리 등 인력관리의 적절성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충실성과 합리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여부 등 *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무가치 평가 완료 여부 등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충실성과 합리성 ②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 직무급 적용 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적용 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개편 성과 * 직무평가와 직무등급 및 임금테이블 연계의 적절성 * 직무등급 설정 및 직무등급별 차등폭 등 직무급 설계의 충실성과 합리성 * 직무급 운영대상 범위의 적절성** ** 간부직 이외 비간부직 직원까지 포함 여부 등 *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여부 및 비중의 적절성 * 주기적 직무재평가 등 지속적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활용 여부 * 직무중심의 조직(직제 및 정원)·인사(채용 및 교육훈련)관리 등 직무 중심 조직운영 노력 ③ 노사합의 등 구성원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및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원활한 노사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등 개정 여부 * 직무평가, 직무등급 및 임금테이블 결정 등 제도설계 및 운영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폭 넓은 참여(시기, 빈도, 참여대상 및 운영성과 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연공성 완화 등 보수체계 합리화 노력

(2) 노사관계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3점)
세 부 평가내용	①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구성·개최횟수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기관장 등 사용자 대표가 참석하는지 여부, 법에서 정한 보고, 협의, 의결사항 등이 성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지 등을 평가 ②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현안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적절성과 이를 통한 노사간의 공감대와 신뢰 형성의 정도를 평가 ③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2. 주요사업 범주 [50점]

1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30점]

<table>
<tr><th>평가지표</th><th>세부평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주요사업의 목표 달성 수준을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계량·비계량 혼합 30점)</td></tr>
<tr><td>세 부
평가내용</td><td>① 주요사업 적정성 및 목표 달성도 점수는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의 목표 달성도 (A)에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감안하여 부여한 등급별 가중치 (B)를 적용하여 산출 (A × B)

② 등급별 가중치 (B)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을 감안하여 다음 6개 등급으로 설정
<table>
<tr><th>등급</th><th>S</th><th>A</th><th>B</th><th>C</th><th>D</th><th>E</th></tr>
<tr><td>가중치</td><td>1.0</td><td>0.95</td><td>0.90</td><td>0.85</td><td>0.80</td><td>0.75</td></tr>
</table>
③ 가중치 등급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부여하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확정함

※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β분포, 목표대실적 등 평가방식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일반적으로 “목표대실적”은 난이도가 낮은 평가방식에 해당)
*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방식의 경우, 적용된 중장기목표수준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 사업환경, 가용자원 등 대내외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해외사업의 경우, 대상국과의 외교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td></tr>
</table>

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등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0점)
세부 평가내용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

3.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3점)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 및 추가 과제 발굴 사례 등 (3.0) *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4.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가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0) *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기관에서 성과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 결과가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

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가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적극행정 실천과 지원 및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적극행정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적극성 및 창의성,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적극행정 교육 실시, 우수사례 홍보 등

6. 총인건비 관리 (감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 - 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 총인건비의 정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② '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2'점의 감점을 부여 *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1.78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5% 초과 10%(1.87%) 이하의 경우에는 '-1'점,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의 감점 부여

제 3 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6개 등급(A~F)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구분	등급	평점	비고
A등급	A^+ A^0	100 87.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B등급	B^+ B^0	75.0 62.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경우 등
C등급	C	5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보통인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거의 동일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과 거의 동일한 경우 등
D등급	D^+ D^0	37.5 25.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 - 과거수준의 실적에 약간이라도 미달하거나,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E등급	E	12.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등
F등급	F	0	- 사업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으며,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한 경우 - 중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사고 발생 사례인 경우 등

○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어 금년도('23년도)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경우, 각 지표별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기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도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활동 단계에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사고 발생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0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비계량지표 중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1개 이상 기관에 동일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기관 간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방만경영 정상화 여부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거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상의 이행내역을 위반(이면합의, 개선사항의 원상복귀 등)하였을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평가방법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의 최종 득점 점수는 현 평가체계 하에서 주요사업 지표 중 기관에서 설정한 주요사업 계량지표 (30점) 점수(A)에 각 피평가기관의 주요사업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하여 평가단이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확정한 등급(B)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최종점수(A × B)를 부여한다.

○ 피평가기관에서 제시한 주요사업 계량지표별로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다음과 같이 6단계(S, A, B, C, D, E등급)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가중치를 계량지표 점수에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사업 계랑지표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가중치>

등급	가중치	비고
S	1.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이 적정하며,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 기관의 전년도 목표 대비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 및 실천한 경우
A	0.9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이 대체로 양호하며,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이 양호하며,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경우 등
B	0.9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보통인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에 대한 고려가 보통 수준인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거의 동일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과 거의 동일한 경우 등
C	0.8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경우 - 과거 수준의 실적에 약간이라도 미달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D	0.80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목표치에 상당히 부합하지 못한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하거나, 관련된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등
E	0.75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명백한 결점이 존재하거나,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업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으며, 기관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수준조차 설정하지 않은 경우 등

○ 계량지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평가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계량지표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 (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목표 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글로벌 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 등을 적용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수행 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 중기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스 등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1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점 + 80점 \times \frac{실적 - 최저목표}{최고목표 - 최저목표}$$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준치는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향지표는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으로 하고 하향지표는 최소값으로 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한다.

○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인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120%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80%로 적용한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표준편차 } S = \sqrt{\sum_{i=1}^{n} \frac{(Y_i - \overline{Y})^2}{n}}$$

Y_i : i연도의 Y값

$\overline{Y}$: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되지만, 기본득점 20점을 적용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평가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표준편차 극단치의 처리방법

1) 표준편차의 계산

○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단치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 이하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준치의 조정

○ 상기 절차에 따라 극단치로 판명된 경우 극단치가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치를 조정한 후 득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는 직전 4개년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다만, 극단치가 직전년도(t-1) 실적치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와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를 계산하되, 직전년도 실적치의 계산 시 상향목표는 직전 전년도(t-2)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상한으로, 하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 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하한으로 하여 산출한다.

*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치인 경우 기준치의 계산

구분		기준치의 계산
극단치가 (t-1)인 경우	상향지표	$\max\left\{\begin{array}{l}\min\left\{\begin{array}{l}(t-1)\text{실적치}\\(t-2)\text{실적치}+2\times\text{표준편차(과거5개년)}\end{array}\right.\\(t-1)(t-2)(t-3)\text{3개년 실적치 평균}\end{array}\right.$
	하향지표	$\min\left\{\begin{array}{l}\max\left\{\begin{array}{l}(t-1)\text{실적치}\\(t-2)\text{실적치}-2\times\text{표준편차(과거5개년)}\end{array}\right.\\(t-1)(t-2)(t-3)\text{3개년 실적치 평균}\end{array}\right.$
극단치가 (t-2)또는(t-3) 인 경우	상향지표	$\max\left\{\begin{array}{l}(t-1)\text{실적치}\\(t-1)(t-2)(t-3)(t-4)\text{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end{array}\right.$
	하향지표	$\min\left\{\begin{array}{l}(t-1)\text{실적치}\\(t-1)(t-2)(t-3)(t-4)\text{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end{array}\right.$

2 목표대실적 평가

○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한다.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text{목표}}$$

○ 목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상향목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하향목표)로 하여 목표달성도별 평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상향목표 : $20 + 80 \times Y$
○ 하향목표 : $20 + 80 \times \frac{1}{Y}$

주 : Y = 평가년도의 목표달성도

3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

○ 글로벌 실적비교의 평가방법은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수준과의 격차, 점유율 등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한다.

④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 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장기 추세선상의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점+80점\times[(\frac{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times a+(\frac{실적(최근3년평균)-최저목표(최근3년평균)}{최고목표(최근3년평균)-최저목표(최근3년평균)})\times(1-a)]$$

* a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1-a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산출값 상한과 하한은 각각 1과 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 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시 반영 비중은 50%:5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업무 및 사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영비중을 달리 적용한 경우(50%:50%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해당 반영 비중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3년 평균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최초 도입 시 최근 3년간 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장기 추세선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근 2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할 수 있다.

○ 장기 추세선은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수준(B) 및 목표달성기간(n)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3년 단위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주무기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준목표, 중장기 목표수준 및 목표 달성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기준목표(A)는 평가지표의 최초 개발 시에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다만, 3년 단위로 장기 추세선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산술평균과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l) 목표치를 산술평균하여 기준목표를 조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목표(B)는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으로 설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준치는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로 하며 단위목표(α)는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B)간 차이를 목표달성기간(n)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목표달성기간(n)은 (중장기 목표 달성 예상연도-기준목표 연도)로 산출한다.

$$\text{단위목표}(\alpha) = \left|\frac{\text{중장기목표}(B) - \text{기준목표}(A)}{\text{목표달성기간}(n)}\right|$$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선형의 장기추세선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기준목표, 단위목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α)로 계산한다.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a)도 조정하여 평가한다.

$$\text{조정단위목표}(\alpha') = \left|\frac{\text{중장기목표}(B) - (t-1)\text{기준목표}(A')}{\text{잔여목표달성기간}(n')}\right|$$

○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의 수준, 정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 불가피하게 지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하며, 하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한다.

* 단위목표 = | {(변경된 중장기목표 - 종전 중장기목표) / 잔여기간} |

- 단,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목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중장기목표)으로 하고, 단위목표는 최근 개선 추세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5 기타 평가방법

○ '총인건비관리(감점)'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하되, 목표는「'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 이하(1.785%)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2점, 5% ~10% 이하(1.87%)의 경우 1점, 10% 초과하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일부 지표의 계량항목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기관의 특성상 특정 비계량·계량지표(또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평가요소)의 가중치는 결측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무성과관리' 내 자체수입증가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자체수입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에 따른 자체수입비율

자체수입 비율	45% 이상	40% 이상 ~45%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5% 미만
기본득점	80점	60점	40점	20점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다음에 제시된 공통적용사항은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인건비의 정의를 참조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 : 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 :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 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위의 공통산식이 아닌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2) 총자산

○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생산성'과 '총자산 회전률', 'ROA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인해 총자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생산성, 총자산회전율 등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나 ‘EBITDA 대 매출액’ 지표 등과 같이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지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3) 인건비

○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포함한다.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의 정의는「‘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과「‘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최초지정 된 연도에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근무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포함하되,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대상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는 총인건비인상률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내의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 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4)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군입대ㆍ육아휴직 대체 충원자와 휴직자가 중복될 경우, 한시적(2년)으로 대체 충원자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노동생산성 등 지표의 점수 산출시) 비교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2. 평가방법 적용요령

(1) 지표값

○ 지표값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수수료,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이 가격결정이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평가항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불변화 지수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국민총량지수와 기관개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한 지수를 사용한다.

○ 불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연도 실적치를 기준연도의 불변화지수로 나누어 불변 실적치로 구한다. 구체적인 불변화 방법은 각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2) 통제불능성의 판단

○ 통제불능성은 지속가능성, 예측성, 반복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예시) 임시거액의 투자자산처분 손익 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가감하여 평가하되, 동일사항에 대해 평가에 기반영된 사항은 실적치의 연속성, 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 유지

○ '22년도 평가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통제불능 요인을 평가에 반영했으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금년도('23년도) 평가부터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대외관계의 변화, 전염병, 상품·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따라 부채증가 등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평가시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매출액, 자산, 부채, 관리업무비, 금융비용, 평균인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성과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경우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시점에서 조정하지 않은 통제불능사유를 발생 이후 시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이중조정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사회적 책임' 지표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3) 목표부여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당시 근거로 한 향후 연도 실적 예상치(기관측 제시)가 왜곡 제시되었음이 추후 평가시점에서 확인될 때에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당초 목표치 혹은 목표부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글로벌실적비교 평가방법은 기관이 작성·제출한 실적보고서상에 글로벌 경쟁기관 등의 최근 실적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당해 연도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동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으로 인해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량평가방법 및 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 경영실적의 연속성·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소송 관련 충당금 전입액 등은 확정판결시까지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회계기준으로 IFRS를 도입한 기관은 IFRS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연결재무제표 대신 기존 개별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평가용 IFRS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의 영향을 받는 지표를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도입 첫해에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과거 5개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며, 차년도에도 동일한 표준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

○ 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	○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등)는 발생주의가 아닌 과거 K-GAAP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확정채무)로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종업원 저리대여금	○ 종업원 저리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종업원급여'는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8)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력 등은 동 사업의 성과발생 이후(사업추진 2년 후, 3년차부터 반영)부터 평가할 수 있다.

(9) 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운용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기관별 편람에 이를 명시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이 증가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량지표는 증원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 산정한다.

(11) 공정률 지표의 경우 경영평가의 목적이 특정 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이므로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 4 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구간은 비교평가 등급구간,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고,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과거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며,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등 급	수 준 정 의
탁 월 (S)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 수 (A)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 호 (B)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 통 (C)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 흡 (D)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제2절 후속조치 등

가.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 바를 준용한다.

나.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으로 기관장·상임이사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편,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임기간에 따른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오류 등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 및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고의성	중대성 정도*	결과처리
고의적 (허위)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한 값에서 종합평가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경미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
비고의적 (오류)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및 해당 실적 수정
	경미한 사항	- 해당 실적 수정 및 그에 따른 점수 보정

* 중대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평가단에서 결정하되, 최종 결과처리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라.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상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용한다.

마.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 신설, 기관유형 변경 등에 따라 최초로 평가받는 기관에 대해 평가제도, 경영관리 등에 대한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의 경영목표·전략, 재무·인사 등 경영기법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해당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별 첨

기관별 평가편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사업(50)	**1. 가축방역사업**	**30**	**12**	**18**
	(1) 가축질병시료채취 추진노력도	7	-	7
	(2) 농장예찰가축질병검색률 향상도	6	-	6
	(3)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5	-	5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
	2. 축산물위생사업	**20**	**8**	**12**
	(1)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 제고 노력	8	-	8
	(2)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	2	-	2
	(3)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2	-	2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가축방역사업 [30점]

(1) 가축질병시료채취 추진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주요질병, AI)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료채취 목표 달성도 = (시료채취 실적 / 목표(계획) 채취수) x 100 * 목표(계획) 채취수 : 주요 질병, AI 시료채취 계획 채취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시료채취 실적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시료채취 계획량은 농식품부 계획*을 참조, '두수'를 기준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예찰검사 추진 계획」 ** 주요질병(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캣슬병) 및 AI 시료 채취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농장예찰 가축질병 검색률 향상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농장예찰 가축질병 검색률 향상(목표부여 편차, 상향지표) ※ 산출시 고려사항 농장예찰 가축질병 검색률 향상 = 질병검색건수/외부기관 검사의뢰건수 (예찰실시결과보고서 제출 건수) · 검사의뢰건수 : 검사의뢰서(예찰실시결과보고서) 제출건수(시·도 방역기관) · 질병검색건수 : 제출검사의뢰서(예찰실시결과보고서) 중 검색된 질병검색 건수 · 검사의뢰건수 및 질병검색건수는 기관에서 운영중인 팜스(FAHMS)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신뢰할 수 있는 축산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확산차단 및 조기근절 (상향지표)
목 표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중장기 경영목표 적용('22~'27년)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목표(%) / 95 / 95.7 / 96.4 / 97.1 / 97.8 / 98.5 목표치는 인허가매칭을 시작한 '21~ '22년의 평균값(95.07점)을 계산하여 설정
측정 산식 및 변수	▪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 현행화사업 완료율(50%)+지자체 인허가 매칭율(30%) + 현장평가향상도(20%)의 합 ① 현행화사업 완료율 = 현행화 완료농장/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축산농장 - 전체 축산농장은 농장DB관리시스템(팜스)에 등록된 연도말 축산농장(휴·폐업포함)을 말하며, 현행화완료 농장은 현행화주기 및 방법에 따라 현행화가 완료된 농장 ※ 농장정보 : 축주명, 농장명, 농장·자택주소, 품종, 농가사진 등 ② 지자체인허가 매칭율 = 매칭농장(팜스)/전체 인허가농장(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 전체 인허가 농장은 지자체 새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인허가 농장을 말하며, 매칭농장의 경우 우리본부 팜스에 등록된 농가와 매칭된 농가 ③ 현장평가 향상도 =농장정보 현장평가 점수 - 점검반이 방역지역(관리지역 등) 내의 전체농가 중 점검 농가를 선정 및 방문하여 평가 ※ 산출시 고려사항 · 축종·사육규모 기준으로 방문주기를 설정하며 축산법에 정의된 가축 중 18개 축종 21개 관리항목의 정보수집 및 제공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 농장관리 환경변화 등에 따라 축종 및 관리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12점)

2 축산물위생사업 [20점]

(1)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 제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8점)	
정 의	일반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상보고 폐기건수 정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시그마수준) $=\Phi^{-1}(\text{오류율})+1.5$ - 오류율(p) $= 1-\frac{\text{폐기건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text{이상보고건(팜스시스템)}}$ - $\Phi^{-1}(p)$:오류율이 p일 때 표준정규분포의 z값 (단, $\Phi(z)=\int_{-\infty}^{z}\frac{1}{\sqrt{2\pi}}\exp(-\frac{x^2}{2})dx$) - 해체검사를 기준으로 하며 축종은 소, 돼지, 닭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 이상보고 건수의 경우, 우리 본부에서 운영중인 위생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며, 폐기건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실적을 집계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도축장 구조조정에 따른 도축장수 감소,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2점)

정 의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용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위험요소 제거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 $\frac{\text{불합격건수}}{\text{이상보고건}} \times 100$ - 불합격 여부의 판단은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 불합격 판단기준 : 서류검사, 외부검사, 표시검사, 관능검사, 기타검사(보고건이 아닌 단순 수량상이 제외) 등 ※ 산출시 고려사항 - 이상보고 건수는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건수를 기준으로하며, 불합격 건수는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시행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현물검사클레임 제로화를 통해 신뢰도향상 기반마련 및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클레임 0건)
측정산식 및 변수	▪ 현물검사클레임 제로 달성 노력 = 100점 - ∑ 클레임 발생점수 (클레임 유형별 감점) - 클레임 유형별 5단계 감점 점수 적용

징계 수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경고
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 클레임 건수는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공식 접수된 건수로 산출
- 징계수준의 경우, 공문접수된 클레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여 확정된 징계수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8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 사업 (50)	**1. 농식품 R&D사업 기획**	**12**	**5**	**7**
	(1) 농식품 R&D산업·기술 동향 조사·분석	3	-	3
	(2) 농식품 R&D사업 기획·발굴 실적	4	-	4
	(3)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2. 농식품 R&D사업 관리	**16**	**7**	**9**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관리 노력	5	-	5
	(2)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최소화 노력	4	-	4
	(3)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	**22**	**8**	**14**
	(1)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7	-	7
	(2)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성과	7	-	7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농식품 R&D사업 기획 [12점]

(1) 농식품 R&D산업·기술 동향 조사·분석 (평가방식: 목표부여 및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 산업·연구개발 관련 미래 사회·환경변화 및 최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목 표	① 농식품 R&D 동향 조사 실적 :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기준치 × 80% ② 농식품 R&D기술 분석 보고서 :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농식품 R&D 동향 조사 실적) × 0.7 + (농식품 R&D기술 분석 보고서) × 0.3 ② 농식품 R&D 동향 조사 실적 : 농식품 R&D 산업·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의 동향조사 실적(기관 누리집 등 외부에 공개된 실적으로 확인) ③ 농식품 R&D기술 분석 보고서: 농식품 분야 미래 기술 예측,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등 R&D기술 분석보고서 발간 실적(발간등록번호 등으로 확인) * 목표 :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2) 농식품 R&D사업 기획·발굴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계량 4점)	
정 의	농식품 산업·연구개발 관련 미래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및 농식품 연구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사업 기획·발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R&D사업 기획 실적* × 0.6) +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 × 0.4) * R&D사업 기획 실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등 당해연도에 제출한 R&D사업 기획 보고서 실적 **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 : 주무부처 또는 R&D사업·예산 심의부처에 당해연도에 제출한 R&D사업 제안 실적 *** 이사회 보고 자료 또는 정부 제출 공문 등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
(3)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점)	

2 농식품 R&D사업 관리 [16점]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관리 노력 (평가방식: 목표부여 및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수행기관 등의 맞춤형 관리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① 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 :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②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 :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 × 0.6)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 0.4) ② 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 = (당해연도 컨설팅 실적) ÷ (당해연도 관리과제 수) × 100 * 당해연도 컨설팅 실적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당해연도 관리과제 중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한 실적 (연구수행 관련 컨설팅 결과보고, 교육 수료증 또는 연구수행기관 관련자 참석자 서명록 등 컨설팅 지원과제(기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③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당해연도에 도출된 SCI 논문의 mrn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평균값 * 목표 : 정부 R&D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도출된 SCI논문의 mrnIF 평균값 **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선별한 과학기술분야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mrn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 저널의 인용정보를 수치화한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 순위보정지수(rnIF,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를 활용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등으로 활용

(2)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최소화 노력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사용 기준 위반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①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 : 목표의 100% ②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 활동률 :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 = (당해연도 수료 인원 ÷ 목표 인원) × 100 * 수료 인원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련 사용관리 교육 수료인원(관련 교육 결과보고 또는 교육 수료증 등을 통해 수료 인원 증빙) ** 목표 인원 : 해당연도 연구비 정산 대상 과제 수 ②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 활동률 = (상시점검 수행 실적) ÷ (관리 과제 수) × 100 * 상시점검 수행 실적 : 연구개발비 불인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대상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 상시점검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수행 실적 ** 관리 과제 수 : 정산 대상인 단계 종료과제, 수행 중인 전체 과제

(3)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 [22점]

(1)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계량 7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창출 성과 중 등록된 특허의 질적 우수성 수준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양질의 특허등록 실적}}{\text{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times 100$ ② 양질의 특허등록 실적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당해연도 등록특허 중 SMART 'B' 등급 또는 K-PEG 'B2' 등급 이상인 특허 건수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의 질적평가 방법으로 9등급 평가,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 특허평가시스템(K-PEG)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개발한 특허의 질적평가 방법으로 9등급 평가, Korea Patent Evaluation & Grading ③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2) 우수기술 확산 성과 실적(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계량 7점)	
정 의	농식품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술인증×0.4) + (우수기술 발굴×0.3) + (기술거래 지원×0.3) ② 기술인증 :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품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기술 등 인증 및 적용제품·전문기업 확인,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건수 ③ 우수기술 발굴 : 기술거래 전문기관 또는 기술거래장터 등 플랫폼에 등재된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기술 건수 * 기술거래 전문기관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산업부) ** 기술거래 플랫폼 : NTB 기술은행,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TLO사무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 미래기술마당 등 ④ 기술거래 지원 : 중소기업 등 농산업체 개발기술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SMK(Sales-Material-Kit) 제작, 기술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기술거래 지원 건수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8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 사업 (50)	**1. 농업재해보험 관리**	**16.7**	**6.7**	**10**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5	-	5
	(2) 농업정책보험사업의 지속성 관리 노력	2.5	-	2.5
	(3)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2.5	-	2.5
	(4)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7	6.7	-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6.7**	**6.7**	**10**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4	-	4
	(2)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3	-	3
	(3)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3	-	3
	(4)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7	6.7	-
	3. 농업정책자금 관리	**16.6**	**6.6**	**10**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6	-	6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2	-	2
	(3)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	2	-	2
	(4)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6	6.6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농업재해보험 관리 [16.7점]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5점)	
정 의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 (보험가입금액지수) × 0.7 + (가입농가지수) × 0.3 * (보험가입금액지수) ∑보험가입금액÷∑기준년도(2020년도) 보험가입금액 ** (가입농가지수) ∑가입농가수÷∑기준년도(2020년도) 가입농가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수탁연도(2021년도)를 고려하여 기준년도 설정
(2) 농업정책보험의 지속성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5점)	
정 의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정책보험의 지속성 관리 노력 = ∑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일반 상품·제도개선 건수)×100 ≥ 50 * 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 : ①보장성 강화, ②농가부담 완화, ③재정 건전성 제고 관련 개선 건수 ** 일반 상품·제도개선 건수 : 그 외 개선 건수
(3)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2.5점)	
정 의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 (교육별 운영 과정 수) × 0.7 + (실무교육 만족도) × 0.3 * 교육별 운영 과정 수: 품목·조사방식 등 교육 주제 수를 운영 과정 수로 산정 ** 실무교육 만족도: 실무교육 이수자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4)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7점)	

2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16.7점]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지침·운용계획 상 목표비율 대비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목표달성도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x 100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모태펀드 추가조성액 ** 목표비율 =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계획(정기) 상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운용지침 상 모태펀드 추가조성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운용지침·계획상 조성액 및 출자목표액 변경시, 변경액 적용

(2)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자펀드의 누적 투자금액, 피투자경영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을 지표화하여 달성도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펀드 투자 성과 = (A×0.5)+(B×0.25)+ (C×0.25) A : $MIN[\frac{\text{자펀드 누적 투자금액}}{\text{자펀드 누적 투자목표 금액}} \times 100, 100\%]$ B : $MIN[\frac{\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 비율}}{\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 목표 비율}} \times 100, 100\%]$ C : $MIN[\frac{\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 비율}}{\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 목표 비율}} \times 100, 100\%]$ * 목표설정 : (A) 5개년 신규투자 실적 × 105%, (B,C) 5개년 피투자경영체의 평균 매출액 및 고용증가율 × 105%

(3)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투자지원사업(사업설명회) 참여 농식품경영체 확대 목표와 투자지원사업(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경영체의 투자유치 목표 건수를 지표화하여 투자지원사업의 확대 노력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 (A+B)÷2 A: $\text{MIN}\left[\frac{\text{IR 참여 경영체 수}}{\text{IR 목표 경영체 수}} \times 100, 100\%\right]$ * 목표설정: 전년도 IR 참여 경영체 수의 5% 상향 B: $\text{MIN}\left[\frac{\text{투자지원사업(IR) 참여 경영체 투자 유치 건수}}{\text{투자지원사업(IR) 참여 경영체 투자 유치 목표 건수}} \times 100, 100\%\right]$ * 목표설정: 최근 5개년 평균 투자유치 건수에 10% 상향

(4)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7점)

3 농업정책자금 관리 [16.6점]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검사 실시기관 비율을 평가 * (산식) 검사 실시기관 비율 = 검사 실시기관 수 ÷ 검사 목표기관 수 x 100 ** 검사: 정기 · 일반 · 비대면 · 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 *** 검사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정원 × 최근 5년간 평균 1인당 검사 기관수)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에서 취급한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중점점검 대상기관 관리 노력을 평가 *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율 =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기관 수 ÷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x 100 ** 검사: 정기 · 일반 · 비대면 · 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 ***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 당해연도 검사계획 수립 기준 < 중점점검 대상> ① 검사대상기관으로 신규 편입된 기관 ② 기관경고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기관 ③ 임직원이 징계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한 기관 ④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정부자금을 회수한 지 2년이 경과한 기관 ⑤ 검사 대상 대출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검사 대상 대출금 금액과 건수가 100% 이상 증가한 기관 ※ ①~⑤에 해당되는 전체 기관에 대해 검사실시

(3)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외부 경영변수에도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감독 가능하도록 비대면 검사 점검건수 증가를 지표화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비대면 검사 확대를 통한 검사 효율성 증대 노력을 평가 * 비대면 점검 건수 증가율 = 당해연도 점검건수 ÷ 목표 점검건수 x 100 ** 목표 점검건수 : 전년 점검건수 x 110

(4)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6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 사업 (50)	**1.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31**	**10**	**21**
	(1)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	15	-	15
	(2) 선박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성과	6	-	6
	(3) 선박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10	-
	2. AGM 예찰 방제	**6**	**3**	**3**
	(1) AGM 발생 대응 노력	3	-	3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3.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4**	**2**	**2**
	(1) 수입재식용식물·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노력	2	-	2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2	-
	4.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9**	**5**	**4**
	(1)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성과	4	-	4
	(2)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31점]

(1)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15점)

정 의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확산 방지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 $= 1 - \{ \frac{\Sigma(\text{평가연도 상대국 AGM 검출 실적 x 가중치})}{100} \}$ ※ 산출시 고려사항 • 상대국 AGM 검출 실적 : 국내에서 선박 AGM 검사 후 미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에 입항시 AGM이 검출되어 통보된 선박의 수이며, 선박 1척당 AGM 검출 정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AGM 검출 정도에 따른 가중치

검출(점)	1~5	6~10	11~20	21 이상	기타
가중치	0.5	1.0	2.0	2.5	0.2

** 기타 : 평가연도 이외 기간에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

*** 국내 선박검사 이후 상대국(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입항전 AGM 분포국가를 경유한 선박은 제외함

(2) 선박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선박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성과(%) $= 1 - \{ \frac{\Sigma(\text{안전사고 발생 인원} \times \text{가중치})}{\text{선박검역 근무인원}} \}$ ※ 산출시 고려사항 1) 안전사고 발생인원 : “AGM 선박검사 안전수칙 지침” 에 따른 선박검사시 안전과 관련된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자의 합(안전사고 보고서 제출 건수)이며, 사고자 상해에 따라 가중치* 적용 * 사고자 상해 가중치

구분	사망	중상	중경상	경상	기타
가중치	40	5	2	1	0.5

1. 경 상 : 4주 이하의 통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
2. 중경상 : 4주 이상의 통원진료 혹은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
3. 중 상 : 뇌 등 생명 유지의 위험이 있는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중요 부위 상실이나 변형이나 신체 주요기능 상실 이상
4. 기 타 : 경미사고(의사 최초 진단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상해가 없는 경우 등)

2) 선박검사 근무 인원 : AGM 현장검역 수행 인원의 합
(지역 사무소 인원 + 평가년도 AGM 검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수)

3) 동일한 사고가 당해 3건 이상 발생시 벌점 5점 추가(가중치에 적용)

(3) 선박 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10점)

2 AGM 예찰 방제 [6점]

(1) AGM 발생 대응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및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항만 주변 지역 등의 AGM 발생 밀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방제 및 선박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예찰 트랩에 대한 조사 이행 실적과 AGM밀도 감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이 약제 방제한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예찰 트랩 조사 이행도 : 100% ② 관계기관 적기 약제 방제 실적 : ·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AGM 발생 대응 노력(%) = { (예찰 트랩 조사 이행 실적 × 0.7) + (관계기관 적기 약제 방제 실적 × 0.3) } x 100 ※ 산출시 고려사항 ① 예찰 트랩 조사 이행 실적 $= \left(\frac{\text{평가년도 트랩 조사 수}}{\text{목표 트랩 조사 수}} \right) \times 100$ * 목표 트랩 조사 수 : 예찰 방제 요령의 조사 간격 기준에 따른 6~9월 트랩 조사 수(당해연도 트랩 설치 수 × 12, 6~9월 10일 간격 조사기준) ** 평가년도 트랩 조사 수 : 설치된 트랩에 대해 고위험기간(6~9월) 검사원들이 실제 조사한 실적(횟수) 단, 동일 지역 월 3회 초과 실적 분은 미포함 ② 관계기관 약제 방제 실적 $= \left(\frac{\text{평가년도 관계기관 약제 방제 횟수 x 가중치*}}{\text{직전 3개년 평균 관계기관 약제 방제 횟수}} \right) \times 100$ * AGM 방제 최적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월 전체 살포 횟수 대비 방제 최적기 기간 범위 내 약제 방제한 실적(횟수)의 비율. 즉, 방제 효율성에 대해 비율별 가중치 적용

최적기 방제 실적 비율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가중치	1.3	1.5	1.7	1.9	2.0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3점)

3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4점]

(1) 수입재식용식물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통해 외래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수입재식용식물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노력(%) = $\{(\frac{\text{병해충 통지실적}}{\text{병해충 발견실적}})\times 0.7+(\frac{\Sigma(\text{병해충 발견실적}\times\text{가중치})}{\text{병해충 발견 실적}})\times 0.3\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1) 병해충 발견실적 : 검역장소 관리 시 컨테이너 1개에서 발견된 병해충 건수(컨테이너 1개에서 다수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가중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항목 적용.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병해충 통지실적 : 신속 통지(발견 당일 통지)한 실적이며, 컨테이너 1개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통지한 실적을 1로 하되 통지 지체 건수는 제외

* 발견된 병해충 중요도별 따른 가중치

구분	비검역 병해충	잠정 규제 병해충	규제병해충		
			규제 비검역 병해충	관리 병해충	금지 병해충
가중치	0.5	1.0	1.0	1.3	1.5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2점)

4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9점]

(1)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계량 4점)

정 의	공항·항만 등 비생물적 경로를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노력(%) = $\left[\left\{\frac{\text{(평가년도 컨테이너 조사대수 / 조사인원)}}{\text{(직전년도 컨테이너 조사대수 / 조사인원)}}\right\} \times 0.5 + \left\{\frac{\Sigma\text{(평가년도 병해충 발견실적} \times \text{가중치)}}{\Sigma\text{(직전년도 병해충 발견실적} \times \text{가중치)}}\right\} \times 0.5\right]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1) 컨테이너 조사대수 :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 조사를 위해 외관 및 내부를 조사한 컨테이너 개수

2) 조사인원 : 분포조사 사업단 전체 월 평균 인원 (관리인력 포함)

3) 병해충 발견실적 :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 조사 시 발견된 병해충 건수

* 발견된 병해충 중요도별 따른 가중치

구분	비검역	잠정 규제병해충	규제병해충		
			규제비검역 병해충	관리 병해충	금지 병해충
가중치	0.5	1.0	1.0	1.3	1.5

(2)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사업 (50)	**1.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20**	**8**	**12**
	(1)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5	-	5
	(2)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3.5	-	3.5
	(3)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3.5	-	3.5
	(4)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2.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17**	**7**	**10**
	(1)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3	-	3
	(2)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3	-	3
	(3)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	2	-	2
	(4)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	2	-	2
	(5)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13**	**5**	**8**
	(1) 농업·농촌 가치확산 성과	2	-	2
	(2) 대국민 도농교류 및 체험기회 확대 성과	2	-	2
	(3) 식량작물 소비 인식 확산 성과	4	-	4
	(4)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20점]

(1)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청년농업인 육성 달성률 = (선발인원 / 목표인원) x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선발인원은 농식품부 시행 공문에 명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 목표인원은 농식품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 연도별 영농정착지원사업 목표 인원

(2)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3.5점)	
정 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수혜자의 전문역량 개발 성과를 측정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전문농업인력 양성률 = (A + B) / 2 * A = 집합교육 이수 실적/집합교육목표 × 100, B = 온라인교육 수료자 실적/온라인교육목표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집합교육 이수자 실적 : 농업교육사업 집합교육을 이수한 실적 · 집합교육 목표(이수자) : 농업교육사업 계획된 집합교육 인원 · 온라인교육 수료자 실적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수료자 실적 · 온라인교육 목표(수료자) : 농업교육포털 계획된 온라인교육 수료자 인원 * (실적) 집합교육 이수자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완료보고서 온라인교육 수료자 : 농업교육포털 통계정보자료 추출 * (목표) 집합·온라인교육은 사업기본(세부)계획서의 목표치를 적용하며, 목표 미지정시 타 운영계획 등으로 대체

(3)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3.5점)

정 의	농업 미래 핵심인력화에 필요한 도시민의 농업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실행준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률 =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수)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 향후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잠재고객(희망DB)로서 당해연도 신규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 · 지원서비스 수혜자 : 당해연도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으로서 귀농 귀촌 준비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상담·교육·체험·정보제공)를 귀농귀촌종합센터로부터 수혜받은 자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추출함

(4)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8점)

2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17점]

(1)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계량 3점)	
정 의	농정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지원체계 강화 및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건수) =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 실적(대국민)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실적(업무담당자) ①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 실적(대국민) : 농업ON 제공 데이터 이용 건수 +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신청 건수 * 농업ON 제공 데이터(서비스) : 농업인 마이데이터, 농식품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②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실적(업무담당자) : 데이터맵(카탈로그) 이용 건수 + GIS서비스 이용 건수 + 분석서비스 이용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농정 빅데이터 활용 성과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내 이용 현황 통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산출

(2)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계량 3점)	
정 의	농업인의 비대면 사업신청 및 온라인 서비스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간편하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업무담당자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농정 의사결정에 활용한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건수) = (농업인) 디지털 농정 서비스 이용실적 + (업무담당자) 농정 의사결정 지원 활용실적 ※ 산출시 고려사항 · (농업인) 디지털 농정 서비스 이용실적: 농업인의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 간편신청,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청년창업농 온라인 신청건수, 농업경영체증명서 온라인발급 등 사업신청 및 서비스 이용건수 · (업무담당자) 농정 의사결정 지원 활용실적: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등 정책결정자가 데이터 분석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한 건수

(3)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계량 2점)	
정 의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스마트농업 기술·장비 실증 확대 과제)와 연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서비스·솔루션 사업화 실적(산업재산권 등록)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점) = 스마트농업 서비스 사업화 우수실적 (0.5) + 서비스 만족도 (0.5) ① 사업화 우수실적 : 당해연도 선정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하고, 연말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우수) 획득한 사업 비율 [(우수과제 수/선정과제 수)×100] ② 서비스 만족도 : 당해연도 선정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서비스)의 농가 만족도 (5점 척도, 100점 환산) ※ 산출시 고려사항 · 스마트농업 서비스 사업화 우수실적 및 만족도 결과는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완료보고 결과에 따름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혁신 방안('22.10.) 中 '스마트농업 기술·장비 실증 확대' 연계 과제
(4)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실적(만족도, 수료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양성성과(%) =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만족도 달성률(0.5) +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달성률 (0.5) ①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만족도(점) = 당해연도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의 교육만족도 평균 (5점 척도) ②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율(%) = (당해연도 보육센터 교육 수료생 / 당해연도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인원)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목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재정사업 평가지표 반영) · 보육생 만족도 달성률(%) = 당해연도 만족도 실적/당해연도 만족도 목표 × 100 · 보육센터 수료율 = 당해연도 수료율 실적/당해연도 수료율 목표 ×100
(5)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3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13점]

(1) 농업·농촌 가치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일반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식도 제고율 = (공동체유지인식 + 환경보전인식 + 식량안보인식)/3 ※ 산출시 고려사항 · 목표 :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재정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식도'는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조사(5점 리커트 척도 방식 점수 부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 전문기관 조사)

(2) 대국민 도농교류 및 체험 기회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정부의 대표적인 행사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통해 대국민(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와 변화를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농업인,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성과를 통해 기관의 도농교류 가치 발굴과 확산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목 표	140개
측정 산식 및 변수	■ 대국민 도농교류 및 체험 기회 확대 성과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 농가 수 + 기업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여한 농가 수 : 전시·체험 행사 부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 및 농업인 단체 수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수 : 전시·체험 행사 부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 법인 및 기업 수

(3) 식량작물 소비 인식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4점)	
정 의	일반국민 대상 식량작물 관련 정책 및 소비 홍보를 통해 쌀·잡곡에 대한 인식변화 및 소비 인식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 × 표준편차 (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식량작물 소비 인식 향상률 = (쌀 소비 인식 향상도 + 잡곡 소비 인식 향상도)/2 ※ 산출시 고려사항 · '식량작물 소비 인식 향상도'는 식량작물 관련 정책 및 소비 홍보를 통해 변화된 쌀과 잡곡에 대한 인식 향상 수준 응답(5점 리커트 척도) 중 '긍정'과 '매우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쌀 및 잡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외부 전문기관 조사)
(4)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점)	

한식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 사업 (50)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	**13**	**6**	**7**
	(1)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	7		7
	(2)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2. 한식의 국내외 확산	**25**	**10**	**15**
	(1) 한식 체험 확산 노력	6	-	6
	(2)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6	-	6
	(3) 해외 한식 확산 성과	3	-	3
	(4) 국내외 한식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10	-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12**	**4**	**8**
	(1)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4	-	4
	(2) 한식 교육 만족도	4	-	4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 [13점]

(1)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국가승인통계로 등록된 한식진흥원 「한식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내 이용량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한식산업 조사 활용도 = (당해연도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 / 목표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 × 100% *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재된「한식산업 실태조사」 다운로드 건수로 반영 ** 목표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 : '23년 신규작성 승인통계로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신규작성 승인통계 중 KOSIS 이용량 확인 가능한 유사 통계인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목표치 설정 ※ 산출시 고려사항 - '23년 4월부터「한식산업 실태조사」국가통계 배포 고려하여 12개월로 환산 평가 실시 - '22년 국가통계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23년 신규 추진 국가통계로, '24년부터 질적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 구성을 위하여 차년도부터 실시되는 통계청 '국가통계 품질진단 결과' 추가하여 복합지표 구성 예정
(2)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점)	

2 한식의 국내외 확산 [25점]

(1) 한식 체험 확산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 의	한식 체험 확산의 노력에 따른 국내외 외국인 대상 체험프로그램 및 한식문화공간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확산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한식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 :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② 한식문화공간 문화프로그램 참여실적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한식 체험 확산 노력 = ① (한식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체험객 실적 × 60%) + ② (한식문화공간 문화프로그램 체험객 실적 × 40%) ① 한식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 = $\frac{\text{당해년도 외국인 참여인원}}{\text{목표 외국인 참여인원}} \times 100\%$ · 외국인 참여인원 : 한식진흥원 주관 국내외 온·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수 (한식문화공간 이음 배움터, 한식 밀키트 체험 사업 등) · 목표 외국인 참여인원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한식 문화프로그램 참여 실적 = $\frac{\text{당해년도 한식문화 체험인원}}{\text{목표 한식문화 체험인원}} \times 100\%$ · 한식문화 체험인원 : 한식문화공간 이음 주관 내·외국인 대상 한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한식갤러리, 한식도서관 등 체험 프로그램) · 목표 한식문화 체험인원 : 전년도 실적의 110% ※ 산출시 고려사항 - '22년부터 추진되어 목표대실적 평가방법 적용, 3년차 실적 보유시 목표부여(편차) 방식 전환 예정

(2)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 의	국내외 한식 확산을 위한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및 결과(상향지표)를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한식당 지원 실적 : 100% ② 관련 단체 지원 실적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 ① (한식당 지원실적 x 50%) + ② (관련 단체 지원실적 x 50%) ① 한식당 지원 실적 = $\frac{\text{당해년도 지원 한식당 수}}{\text{목표 한식당 수}} \times 100\%$ · 지원 한식당 수 :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에 참여한 한식당 수(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 · 목표 한식당 수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 * '22년 신규 사업 및 평가대상 실적치 3년 미만으로 목표대실적 평가방법 적용 ② 관련 단체 지원 실적 :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에 참여한 관련 단체 수 (해외한식당협의체, 해외 교류단체·기업, 재외공관 등) ※ 산출시 고려사항 - 사업 세부 내역 변동에 따라 매년 대상 사업 일부 변동 가능

(3) 해외 한식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해외 한식당 지원사업 수혜자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 성과(상향지표)를 도전적으로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해외 한식 확산 성과 = ① (한식당 수혜자 만족도 성과 × 40%) + ② (한식당 소비자 만족도 성과 × 60%) ① 한식당 만족도 =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 · 수혜자 만족도 : '22년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 사업 수혜 한식당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 - 전년도 만족도 점수}*10%] ※ 산출시 고려사항 - '22년 해외 우수한식당 첫 지정으로 유사 해외 한식당 지원사업 만족도 실적의 평균값을 기준치로 설정하여 상향 목표 설정 ② 한식당 소비자 만족도 =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 · 소비자 만족도 : 한식진흥원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한식당 방문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전년도 만족도 점수}*10%]

(4) 국내외 한식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10점)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12점]

(1)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상향지표)을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한식 조리인력 양성 실적 : 100% ② 한식 교·강사 양성 실적 :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4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2 × 표준편차 (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 ① (한식 조리인력 양성 x 40%) + ② (한식 교·강사 양성 x 60%) ① 한식조리인력 양성 실적 = (당해연도 '국내외 한식조리교육' 인원 / 목표 교육인원) × 100 · 수료 인원 : 국내외 한식전문 조리 인력 교육 수료인원 (국내외 한식 관련 교육기관·호텔·해외한식당협의체 등 대상 교육 수료생) · 목표 교육 인원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 ※ 산출 시 고려사항 - 전문인력 양성 실적 평가를 위하여 일회성 교육 참가인원 제외 산정 ② 한식 교·강사 양성 실적 = 당해연도 '국내외 한식 교·강사교육' 인원 · 교육 인원 : 국내외 한식 교·강사 및 해외 파견 한식전문가 교육 수료 인원

(2) 한식 교육 만족도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여 질적 성장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국내외 한식 교육 만족도 = ① (한식 조리 관련 교육 만족도 x 40%) + ② (한식 교·강사 교육 만족도 x 60%) ① 한식 조리 관련 교육 만족도 =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 · 만족도 : 국내외 한식전문 조리 인력 교육 수료인원(국내외 한식 관련 교육기관·호텔·해외한식당협의체 등)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평균값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 - 전년도 만족도 점수)*10%} ② 한식 교·강사 교육 만족도 =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 · 만족도 : 한식 교·강사 및 해외 파견 한식전문가 양성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평균값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 - 전년도 만족도 점수)*10%}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4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사업(50)	**1.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7**	**7**	**10**
	(1) 입주기업 지원 성과	5	-	5
	(2) 청년창업 지원 성과	5	-	5
	(3)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2. 비즈니스 지원 사업	**14**	**6**	**8**
	(1) 판로개척 지원 성과	5	-	5
	(2) 인력양성지원 성과	3	-	3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
	3. 기술 지원 사업	**19**	**7**	**12**
	(1) 장비활용 촉진 성과	7	-	7
	(2) 제품 출시 성과	5	-	5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7점]

(1) 입주기업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관리 등을 통한 고용창출 성과와 매출액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① 매출증가목표 : 5.52% (국내 '22년 식품제조 매출액 성장률 4.6% 대비 120%) ② 고용증가 목표 : 3.6% (국내 '22년 취업자 증가율 3% 대비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입주기업 매출증가실적/입주기업 매출증가목표) × 80% + (입주기업 고용증가실적/입주기업 고용증가목표) × 20% ② 입주기업 매출 및 고용은 당해연도 말 기준 2년 연속 매출 발생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성과목표치는 매년 도출되는 성장률 대비 120%로 한다.
(2) 청년창업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창업 지원 성과 = $\left(\frac{(\text{창업건수}+\text{제품출시건수})}{\text{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팀수}}\right)\times 100$ ② 창업 건수는 예비창업팀이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 한 기업의 건수로 함 ③ 제품출시 건수는 초기창업팀이 당해연도에 품목제조보고 신청 후 승인이 이루어진 제품의 건수로 함 ④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팀 수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되어 협약체결 한 팀 수로 함 ⑤ 창업 건수와 제품출시 건수는 팀당 최대 1건으로 함 ⑥ 창업 성과의 목표치는 전년 대비 110% 상향으로 한다. - '25년부터는 창업 지원 성과 실적을 목표부여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한다.
(3)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7점)	

2 비즈니스 지원 사업 [14점]

(1) 판로개척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식품기업 마케팅 지원 성과향상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과 지원을 통한 식품기업의 판로개척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실적 = (참여기업 목표달성도 × 40%) + (매칭성과 목표달성도 × 60%) ① 참여기업 목표달성도 = $\frac{\text{참여기업 수}^{*}}{\text{참여기업 목표 수}^{**}} \times 100$ * 비즈니스 플랫폼 가입기업, 기업공동사업, 통합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복 포함) ** 전년대비 120% 예산보정 ② 매칭성과 목표달성도 = $\frac{\text{매칭 건수}^{*}}{\text{매칭성과목표}^{**}} \times 100$ *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비즈니스 플랫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증빙 서류(구매의향서·, MOU, PO, 기업제출보고서) ** 전년대비 120%

(2) 인력양성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식품분야 현장실습 및 실무형 교육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성과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① 현장실습 지원 성과 : 전년 대비 110% ②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 : 목표 대비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력양성지원 성과 = (현장실습 지원 성과 × 60%) +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 × 40%) · 현장실습 지원성과 = $(\frac{\text{취업률 증가실적}}{\text{취업률 증가목표}}) \times 100$ ·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 = $(\frac{\text{식품 실무교육 수료 인원}}{\text{식품 실무교육 목표 인원}}) \times 100$ ② 현장실습 지원성과의 취업률은 최근 2개년도 현장실습 지원사업 수혜자 중 취·창업 성과를 측정한다. - 당해연도 수혜자는 대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반영 ③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의 식품 실무교육 목표 인원은 당해연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의 목표치 반영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점)

3 기술 지원 사업 [19점]

(1) 장비활용 촉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비활용촉진성과 = (A × 50%) + (B × 50%) ② 장비가동 달성도(A) = $(\frac{\text{장비가동률 실적}^{*}}{\text{장비가동률 목표}^{**}}) \times 100$ * 장비가동률 = $(\frac{\text{장비 가동 시간}^{1)}}{\text{장비가용 시간}^{2)}}) \times 100$ ** 장비가동률 목표: 전년 장비가동률 대비 101%(임계치 도달) 1) 장비 가동시간: 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계 - 실질가동시간: 시험분석 계측 교육 등을 위해 장비를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장비를 가동한 시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2) 장비 가용시간: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주5일 × 50주 = 250일 장비가동률 측정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진흥원 보유장비 중 3,000만 원 이상 장비로 한함 ③ 장비활용 달성도(B) = $(\frac{\text{장비 활용 실적 건수}^{*}}{\text{장비 활용 목표 건수}^{**}}) \times 100$ * 장비활용 실적 건수 : 기술장비 활용 건수[1] +생산장비 활용 건수[2] + 교육장비 활용 건수[3] 1) 기술장비 활용 건수 = 기술장비 공동활용 건수 + 시험분석 건수 2) 생산장비 활용 건수 = 생산장비 공동활용 건수(c) + 시제품 제작 건수(d) 3) 교육 장비 활용 건수 = 실무교육 활용 건수 + 실습교육 활용 건수 ** 장비활용 목표 건수 : 전년 장비활용 실적 건수의 110%

(2) 제품 출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식품기업 기술·생산 지원을 통한 제품 출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제품출시 성과 = (A × 60%) + (B × 40%) * 기술개발 제품출시 달성도 (A) = $(\frac{\text{기술개발 제품 실적}}{\text{기술개발 제품 목표}}) \times 100$ ** 네트워크 제품출시 달성도 (B) = $(\frac{\text{네트워크 제품 실적}}{\text{네트워크 제품 목표}}) \times 100$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축산환경관리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	9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사업(50)	**1. 축산환경 관리사업**	**17**	**7**	**10**
	(1)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6	-	6
	(2)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4	-	4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2.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16**	**7**	**9**
	(1) 축산환경 개선 기술 활용도	3	-	3
	(2)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	6	-	6
	(3)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디지털 혁신사업	**17**	**6**	**11**
	(1)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정보 DB화	5	-	5
	(2)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	6	-	6
	(3) 디지털 혁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60**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6점]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국민소통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1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안전 및 재난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5) 윤리경영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축산환경 관리사업 [17점]

(1)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기존 퇴비·액비화 중심에서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 비중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만톤) = 연간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합산 *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방식: 기존 퇴비·액비화를 제외한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플라스틱, 수출 등 ② 양분관리·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 등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이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각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처리방식 다각화로 축산분야 新 가치 창출 - 선정평가, 설계 기술검토, 사업관리를 통한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관리로 가동률 제고 등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 기반 마련 ③ 전년대비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 용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10% 이상 상향 목표 설정(처리용량 300일 기준) (신규지표)

(2)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농장 스스로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축산농장를 육성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깨끗한 축산환경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수(기존+신규+재작성) / (전체 농장 수)} × 100 * 농식품부장관명으로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가수 * 전체 농장 수: 110,000호 (허가 및 등록) ②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축산업 인식 전환·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홍보(지자체 설명회, 우수사례 등),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농장를 육성 ③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대책('30년까지 1만호 조성)을 고려하여 조기 달성을 목표로 매년 전년대비 신규 지정 농장 5% 상향 목표 설정 * '24년 이후: 전년 목표대비 신규 지정 5% 상향(기존 지정농장 유지)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2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16점]

(1) 축산환경 개선 기술 활용도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축산환경 개선 기술 발굴(평가), 해외교류 및 수출 등으로 현장적용 기술 전파, 축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환경 개선 기술 활용도 = 성과 실적 / 성과목표(건) × 100 ②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해외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기술 발굴, 수출 지원을 통해 축산환경 산업 성장을 유도 - 적정처리 유도, 처리효율 개선, 악취저감 효과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 질적 향상 도모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건): 홍보, 세부지침 개선 등을 통해 평가 참여 신청 건수 * 축산환경 산업 해외수출 지원(건): 축산환경 개선 기술 해외전파, 수출 행정 지원 및 수출 건수 등 ③ 축산환경 개선 기술 발굴(평가), 해외수출 지원 등 기술 활용도 매년 3건 이상 상향 목표 설정(신규지표)

(2)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축산환경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매년 만족도 점수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점) = 해당연도 만족도 조사 결과 * 해당연도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전문기관 위탁) 및 결과 피드백 ② 가축분뇨 처리, 축산악취 등 ESG와 연계한 축산환경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 자격증 취득 양성을 통해 축산환경 역량 강화 실현 -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온라인·집합교육), 축산환경 컨설턴트 보수 교육,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 교육 등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 ③ 해당연도 교육 만족도는 직전년도 결과와 최근 3년(해당연도 포함) 평균 결과 중 높은 실적으로 목표 설정

(3)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3 디지털 혁신사업 [17점]

(1)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환경 정보 DB 구축률(%) = (정보가 DB화된 축산농가 수) / (전년도 전국 주요축종* 축산농가 수) × 100 * 주요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② 축산환경 관련 DB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축산 전환 추진 - 축산농가(축산환경실태조사기준)의 축산환경 및 ICT를 활용한 악취측정 정보의 DB화(포털형식 시스템 개발) ③ 연도별 2.5%p 상향 목표 설정(신규지표)

(2)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질소, 인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농가 양분부하 map 작성률(%) = (양분 발생량 조사 시·군) / (전국 시·군 (152개)) × 100 * 축산계의 영향이 적은 광역시 등을 제외한 152개 시·군 목표 ② 실제 측정·분석된 지역단위 양분 발생량을 DB화하여 신뢰성·실효성 있는 통계자료 및 정책수립 등 활용 가능 - 전국 축산농가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시·군 양분 부하량, 가축분뇨 처리방법별(자가, 위탁) 등 map 작성 ③ 연도별 5% 상향 목표 설정

(3) 디지털 혁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점)